##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 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래 -

- 1. 전자증권법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주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2. 따라서, 주주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※ 주주 조치 사항

- 2019 년 8 월 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- 2019 년 8 월 21 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년 8 월 22 일부터 9 월 11 일까지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- \* 증권회사 방문기일(2019.08.21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2019년 9월 11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2019년 7월 26일

주식회사 한샘 대표이사 최양하